

법령코너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8 - 224호

국가표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단체,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국가표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공고

1. 제목 : 「국가표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 일시 및 장소 : 2008년 8월 21일(목) 15:00 기술표준원 대강당

3. 개정주요내용

- 표준·인증제도 운영체계 조정
 - 국가표준심의회 : 소속(총리실·지경부) 및 직급(총리·상관) 조정
 - 심의회 산하 3개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
- 법정 강제인증마크(6개 부처 14개 마크)를 하나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하고 운영지침을 마련
 - 지경부 : '09.7.1부터 적용, 환경부 등 타 부처 : '11.1.1부터 적용
- 20개 유형의 강제인증심사절차를 9개 모듈심사절차로 간소화하고 운영지침을 마련
- 표준·인증관련 용어의 정의
 - 인정기관, 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

3. 발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사회자 : 고려대 강병구 교수
- 발표자(2명)
 - 국가표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기술표준원 박윤수 팀장)
 - 국가표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검토(서울산업대 김찬우 교수)
- 패널리스트(6명)
 - 중앙대 이용규 교수
 - 산업기술시험원 정영복 본부장
 - 아가방앤컴퍼니 정도현 전부
 - 한국소비자보호원 장학민 팀장
 - 소비자시민의 모임 문은숙 처장
 - 방위사업청 김병철 팀장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 참석자 등록	
15:00~15:05	· 공청회 안내 및 개회	김홍 서기관
15:05~15:10	· 인사말씀	기술표준정책과장
15:10~15:12	(장내정리)	
15:12~15:20	· 패널리스트 소개 및 토론 진행 안내	사회자
15:20~15:40	· 주제별 발표	
15:50~16:20	· 패널리스트 의견 발표 및 토론	
16:20~16:5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50~17:00	· 종합정리	
17:00	· 폐회	

4. 의견제출

- 공청회 참관 등록 장소에서의 지정양식에 의한 의견제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참여마당 → 정책제안)를 통한 의견제출

5. 공청회에 대한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김 홍 서기관, 황준수 주부관
(☎02-509-7221~3, 7351)

| 기술표준20088

법령코너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216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전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검사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에 대한 제한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승강기 개발 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 주요내용

- 화재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리의 사용은 제한하여 왔으나 내화 성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 유리 등의 사용을 허용
- 승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를 허용
- 승강기로의 접근 방식을 위하여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 접근 방지 보호벽의 설치뿐 아니라 화단이나 연못, 난간 등의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 난간 등의 설치 규정 삭제
- 승강기 로프를 고성하는 방식의 경우 그간 특성방식만을 허용하였으나 안전성이 확인된 다양한 고정방식을 허용하여 신기술 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7238~41, FAX : 02-509-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8 - 21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 범위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공고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시험·검사인증 품목	
				당 초	변 경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우152-71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이유종	02-8601-114 www.ktl.re.kr	1. 휴대용 레이저용품 2. (신선) 3. (신선)	1. (좌동) 2. 건전지 3. 디지털도어록

2.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표준2008.8